

예산총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7,365,968	17,020,979
일반회계	511,623,227	15,348,697
특별회계	55,742,741	1,672,282
기타특별회계	55,742,741	1,672,282
지역발전특별회계	810,000	24,300
의료급여특별회계	130,152	3,905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4,282,950	128,48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63,325	19,90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461,777	13,85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38,708	121,161
수질개선특별회계	43,577,669	1,307,33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78,160	53,3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40,02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